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기업 활동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되었고, 도시계획조례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에 수립절차 투명화(안 제3조 내지 제8조)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수립절차 및 의견수렴 방법 명확화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의 확대(안 제9조)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면적을 5퍼센트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서 변경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

다. 군계획시설 관리규정 명확화(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 명시(안 제13조)

마. 개발행위 허가 및 심의기준 완화(안 제15조 내지 제30조)

○ 개발행위허가를 지역실정에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농업관련시설 중 66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 제외하여 주민불편해소에 기여.

○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토지분할제한 면적을 2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바.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안 제31조 내지 제54조,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및 별표 19)

○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종류 등)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대허용범위를 적용하여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에 기여.

○ 개발가능성이 높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개선함.

○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하여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변경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 확충 기여.

사.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안 제55조 내지 제74조)

○ 법령에서 위임된 심의사항을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와 지역 민의를 대변하시는 군의원 포함한 군계획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건축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심의를 2중으로 받도록 하는 사항을 공동위원회(도시계획 및 건축)를 구성하여 일괄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

아.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법령 및 조문을 현재 법령에 맞추어 정비

4.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1건 의견 미반영(군 계획위원회 위촉직의 한 성별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2014.10.16 ~ 2014.11.4.)

바. 성주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2014.11.14.)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개정은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대폭 개정과 도시계획조례의 수차례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이 복잡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문 총 77조 및 부칙 2조로 구성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며,

○ 본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심의기준과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종류 등) 완화 등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안 제6조)

○ 시행령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추가할 경우를 조례에 위임

-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를 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을 예시함

나.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

-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광고물 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안 제11조)

○ 광고물 등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쓰기 하도록 규정(영 제12조)

- 법률 개정으로 한글 전용 광고물 등에 외국어를 함께 쓰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함.

라.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안 제23조제8항)

○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옥외광고업자 등의 부담을 이유로 사이버교육 도입

○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이수 시 이를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마.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안 제24조제3항·제4항)

○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 조사 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 법령의 개정으로 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 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4.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1건(안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용도) 심사 가결

○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은 건축주가 간판표시계획서를 간판 및 게시시설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에 제출해야 함.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4. 10. 16 ~ 11. 04)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1건(안 제8조 주민협의회 운영) 의견 반영

○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검토의견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 본문 25조 및 부칙 5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광고물 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사이버교육 인정 근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등을 추가 및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는 상위법 및 경상북도 관련조례와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